# (재)경북테크노파크 정관 변경 보고

2024. 2. 8.



## (재)경북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안

개정일 : 2024년 2월 8일

제출자: (재)경북테크노파크

주무부서 : 경제산업국 소재부품산업과

#### 1. 개정이유

- 가. 경북테크노파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통합 추진에 따라 피통합 기관의 사업 및 관련 사업을 명시하여 법인의 기능을 재정립하고자 함
- 나. 두 기관 통합에 따른 업무, 기능, 조직 및 인력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정관을 재정비하고자 함
  - ※ 경북테크노파크 이사회 의결('24.1.22) 및 중소벤처기업부 정관 변경 승인 통보('24.2.8.)

#### 2. 주요내용

- 가. 법인 주요 사업 내용 일부 추가(안 제4조제1항)
  - 1) 피 통합기관의 소관 사업 추가(안 제4조제1항13호)
    - 하이브리드부품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 개발 및 육성사업
  - 2) 과기부 '지역SW산업진흥기관 지정' 위한 사업 추가(안 제4조제1항23호)
    - ICT 및 소프트웨어 융합산업 육성업무
- 나. 기관 통합 후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조직 이원화(안 제29조, 제29조의 2)
  - (기존) 전략경영지원실 ⇒ (변경) 전략경영실, 행정지원실
- 3. 신 · 구조문대비표 : 붙임 1
- 4. 경북테크노파크 정관 전문 : 붙임 2

# (재)경북테크노파크 정관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 (재)경북테크노파크 정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고
법인 내의 경영전략, 예산, 행정	제29조(전략경영실) ① 원장은 법인 내의 경영전략, 예산 등 업무를 지 원하는 <u>전략경영실</u> 을 별도로 두고, 실장은 원장이 임면한다.	
	② <u>전략경영실</u> 의 직무 범위는 경영 전략, 예산 및 각 부서에 대한 지 원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기관 통합으로 인한 부서 기능 이원화
<신설>	제29조의2(행정지원실) ① 원장은 법인 내의 행정 등 업무를 지원하는 행정지원실을 별도로 두고, 실 장은 원장이 임면한다. ② 행정지원실의 직무 범위는 회 계, 경리, 시설관리 및 각 부서에 대한 행정지원업무 등의 업무를 수 행한다.	반영
제29조의2(감사실) ① 원장은 법인 내의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실 을 별도로 두고, 소속직원은 원장 이 임면한다. ② 감사실은 내부 조직의 통제제도 를 내실화하고 운영의 적정성, 공 정성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도 모하며, 개선을 통하여 경영합리화 를 이루기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붙임2]

# (재)경북테크노파크 정관 전문

### 재단법인 경북테크노파크 정관

```
제정 1998.08.27. 법인설립허가
  개정 1998.11.26. 제1차 이사회 및 산업자원부 승인
  개정 2000.01.07. 제5차 이사회 및 산업자원부 승인
  개정 2002.01.18. 제14차 이사회 및 산업자원부 승인
  개정 2002.05.21. 제17차 이사회 및 산업자원부 승인
  개정 2006.12.29. 제31차 이사회 및 산업자원부 승인
전부개정 2008.05.16. 2008년 제3차 이사회 및 지식경제부 승인
  개정 2010.01.07. 2009년 제5차 이사회 및 지식경제부 승인
  개정 2010.02.26. 2010년 제1차 이사회 및 지식경제부 승인
  개정 2011.09.06. 2011년 제3차 이사회 및 지식경제부 승인
  개정 2011.11.30. 2011년 제4차 이사회 및 지식경제부 승인
  개정 2012.04.10. 2012년 제1차 이사회 및 지식경제부 승인
  개정 2012.10.02. 2012년 제4차 이사회 및 지식경제부 승인
  개정 2013.01.31. 2012년 제5차 이사회 및 지식경제부 승인
  개정 2013.06.19. 2013년 제1~2차 이사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승인
  개정 2014.04.25. 2014년 제1차 이사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승인
  개정 2015.04.09. 2015년 제1차 이사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승인
  개정 2015.12.02. 2015년 제3차 이사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승인
  개정 2016.04.01. 2016년 제1차 이사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승인
  개정 2017.04.06. 2017년 제2차 이사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승인
  개정 2017.08.23. 2017년 제4차 이사회 및 중소벤처기업부 승인
  개정 2018.05.24. 2018년 제1차 이사회 및 중소벤처기업부 승인
  개정 2018.07.31. 2018년 제2차 이사회 및 중소벤처기업부 승인
  개정 2019.01.02. 2018년 제3차 이사회 및 중소벤처기업부 승인
  개정 2019.04.01. 2019년 제1차 이사회 및 중소벤처기업부 승인
  개정 2019.07.31. 2019년 제2차 이사회 및 중소벤처기업부 승인
  개정 2020.05.07. 2020년 제2차 이사회 및 중소벤처기업부 승인
  개정 2021.12.29. 2021년 제4차 이사회 및 중소벤처기업부 승인
  개정 2022.04.14. 2022년 제1차 이사회 및 중소벤처기업부 승인
  개정 2022.08.18. 2022년 제3차 이사회 및 중소벤처기업부 승인
  개정 2023.05.04. 2023년 제1차 이사회 및 중소벤처기업부 승인
  개정 2024.02.08. 2024년 제1차 이사회 및 중소벤처기업부 승인
```

####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경북테크노파크(이하 "법인"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Gyeongbuk Technopark라 한다.

- 제2조(목적) 법인은 경북지역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지역 혁신사업간 연계 조정 등 지역혁신거점기관으로서 지역산업의 기술고도화와 기술집약적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활성화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28>
- 제3조(사무소 등) 법인의 주사무소는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에 두며, 이사회의 의결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승인을 거쳐 분소, 산하기관 또는 자회사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04.09., 2017.08.23.> [전문개정 2012.12.28.]
- 제4조(사업) ①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0.02.25, 2012.12.28., 2015.04.09., 2015.12.02., 2018.07.31., 2024.02.08.>
  - 1. 지역산업 혁신주체 간 연계 등 지역혁신거점 기능 수행
  - 2. 지역 기술정책·산업정책 등 지역전략산업 기획업무 총괄
  - 3. 지역전략산업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 4. 지역 내 기술혁신역량 조사
  - 5. 지역발전연구원 및 지역혁신협의회의 연구과정 참여 및 지원
  - 6.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 관리 및 지원사업
  - 7. 지역산업진흥 및 일자리 창출사업
  - 8. 산, 학, 연 연계를 통한 공동기술개발
  - 9. 창업보육, 연구개발, 정보이용, 교육훈련, 경영지도 및 자문, 시험 인증, 생산판매지원, 정보시스템구축, 애로조사 및 금융기관·지원 기관 연계 등 기업지원사업
  - 10. 기술사업화, 기술이전 및 지식재산의 획득·관리·지원
  - 11. 그린카부품산업, 천연염색·천연색소 관련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 12. 그린카부품산업 관련 인프라구축 및 지원
  - 13. 하이브리드부품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육성사업
  - 14.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및 시험생산 등 실용화 사업

- 15. 산업과 기술에 관한 정보의 유통 및 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의 평가
- 16. 정부기관 등의 위임·위탁사업
- 17. 연구개발시설 및 장비 공동이용사업
- 18. 혁신거점 설치 등 지역특화센터사업 운영
- 19. 특화센터 등 지역의 장비 및 시설의 통합관리
- 20. 지역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성과평가 및 발굴·기획
- 21. 수탁 학술·연구용역사업
- 22. 문화산업 및 콘텐츠 관련 사업
- 23. ICT 및 소프트웨어 융합산업 육성 업무
- 24. 기타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 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별도의 수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6.19., 2017.08.23.>

#### 제 2 장 임 원 및 직 원

- **제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5.04.09., 개정 2022.08.18.>
  - 1. 이사장 2인 이내
  - 2. 원장 1인
  - 3. 이사 15인 이하(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다)
  - 4. 감사 2인 이내
  - ② 제1항의 임원 중 원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상근으로 한다. 비상임임원중 당연직 임원은 그 직에 따라 선임되며, 선임직 임원은 비공개추천방식으로 선임한다. 이때 신원조회, 신원조사, 범죄경력조회 등을생략한다. <개정 2015.04.09., 개정 2022.08.18.>
  - ③ 법인 상근임원(원장)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경쟁의 방식으로 선임해야한다. <신설 2015.04.09.>, <개정 2022.08.18.>

- ④ 법인의 임원은 법령과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와 책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5.04.09.>
  - 1.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손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 3.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임원이 제4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 한 경우 이사회에 그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임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5.04.09.>, <개정 2017.08.23.>
- 제6조(이사) ①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선임 없이 당연히 이사(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가된다. <개정 2012.12.28., 2013.06.19., 2015.12.02., 2017.08.23., 2018.07.31.>
  - 1. 경상북도지사
  - 2. 영남대학교 총장
  - 3. 원장
  - 4.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업무 담당국장
  - 5.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 6. 경상북도 소관업무 담당국장
  - 7.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원장
  - 8. 경산시장
  - 9. 영천시장
  - 10. 경일대학교 총장
  - 11. 대구가톨릭대학교 총장
  - 12. 대구대학교 총장
  - 13. 대구한의대학교 총장

- ② 당연직 이사가 아닌 이사(이하 "선임직 이사"라 한다)는 출연비율에 따라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법인에 출연한 기관은 출연비율만큼 원장에게 선임직 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법인에 출연한 기관의 구성원이 당연직 이사로 있는 경우에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수만큼 선임직 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5.04.09.>
- ③ 선임직 이사는 경제인, 학계, 과학기술계, 법조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원장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선임직 이사 중 1인 이상은 지역 외 전문가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12.28.>[전문개정 2022.08.18.]
- **제7조(이사의 임기)** ①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 만료되며, 후임자가 이사직을 승계한다.
  - ② 선임직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04.09.>
  - ③ 임기가 만료된 선임직 이사는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 한다.
  - ④ 선임직 이사가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궐위된 때에는 그 후임자를 차기이사회에서 선임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12.12.28., 2015.04.09., 2022.08.18.>
  - ⑤ 이사가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법인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신설 2015.04.09.>, <개정 2018.07.31., 2022.08.18.>
- **제8조(이사장)** ①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이사장은 경상북도지사와 영남대학교 총장으로 하며, 선임 이사장은 경상북도지사가 된다.
  - ② 선임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선임 이사장이 이사회의 회의에 불출석한 경우에는 이사장, 원장 순으로 회의를 주재한다. <개정 2012.12.28., 2022.08.18.>
  - ③ 이사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이사장이 시·도지사일 경우, 업무대행자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5.04.09., 2022.08.18.>
  - ④ <삭제 2015.04.09.>

- **제9조(원장)** ① 원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법인이 행하는 모든 사업의 최종 책임자로서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총괄 하며, 청렴의무를 가진다. <개정 2010.02.25., 2012.12.28., 2020.05.07.>
  - ② 원장은 원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중소벤처 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상근이어야 한다. 다만, 대학교수는 교수직을 사퇴 또는 휴직한 경우에 한해 원장으로 선임될 수 있다. <개정 2013.06.19., 2017.08.23.>
  - ③ 원장은 기업·대학·연구소 등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기술·경영 및 행정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풍부한 경제·산업분야의 전문가를 선임하여야 하며,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신설 2015.04.09.>, <개정 2018.07.31., 2020.05.07.>
    - 1. 대학에서 정교수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에서 선임연구원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에서 책임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3. 기타 지방자치단체 관련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소 및 「산업기술 혁신촉진법」에 따라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에서 대표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4. 대기업에서 이사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5. 중소기업 대표로서 5년 이상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3급 이상 고위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7.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에서 이사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8. 기타 테크노파크의 경영에 도움이 되는 경력이 있다고 원장추천 위원회에서 인정되는 자

- ④ 원장 후보자는 공모 신청시 7대 비리(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 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등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 관한 인사검증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을 서약하여야 하며, 임명 후 7대 비리 관련 행위가 밝혀진 경우에는 직위해제, 해임, 파면 등 인사 상불이익을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신설 2018.07.31.>
- ⑤ 원장추천위원회는 원장후보자로 추천한 자의 발표자료 및 동영상을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검증하고, 필요할 경우 평판조회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07.31.>
- ⑥ 원장은 취임 후 3개월 이내에 테크노파크 운영방향 및 향후 경영전략에 대하여 관계기관 및 유관기관에 공개 발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8.07.31.> ①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년 이내에 한해 임기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임기 연장의 경우 이사회 의결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개정 2012.03.15., 2015.04.09., 2018.07.31.>
- ⑧ 원장은 연임할 수 있으며, 원장이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궐위된 때에는 후임자 선출을 하기 위해 원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 원장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7대 비리 관련 행위가 밝혀진 경우에는 연임할 수 없으며, 임기 만료 외의 사유로 궐위된 전임 원장의 잔여 임기가 1년 이내인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새로시작한다. <신설 2022.08.18.>
- 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원장의 보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지침을 통보할 수 있으며, 원장의 보수는 이 지침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원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시에 이사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원장의 연임 결정, 차기연도 연봉 또는 성과급 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과 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2.12.28., 2015.04.09.>
- ⑩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원장을 파면 또는 해임을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28., 2013.06.19., 2017.08.23.>

- 1. 법령, 정관 또는 적법한 이사회 의결을 위반한 경우
-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 3. 미흡한 경영성과 등 직무수행에 현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⑪ 제10항의 파면 또는 해임안이 원장 본인의 비리와 관련된 경우 원장은이사회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2.12.28.>, <개정 2015.04.09., 2019.01.02., 2020.05.07.>
- ② 원장이 제10항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되는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2.08.18.>
- ③ 이사장은 원장이 제10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원장을 직위해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직위해제 한다. <신설 2018.07.31.>
- (4) 원장의 궐위 시 후임자를 선출할 때까지 정책기획단장이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단, 원장 임기 만료의 경우에는 후임자 선임 시까지 원장의임기는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28., 2018.07.31.>
- (5) 원장은 임기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임기 내 달성목표를 포함한 기관 발전계획과 당해 연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기관발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실행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04.09.>, <개정 2018.07.31.> (6) 원장이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사직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산업 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제35조제7항에 따라 퇴직금 정산시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이사장이 사전협의 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04.09.>, <개정 2017.08.23., 2018.07.31.>
  - 1. 원장추천위원회 개최 비용(원장추천위원회 위원 위촉 비용 등 제반 비용을 포함한다.)
  - 2. 원장 임기의 잔여 일수에 기본월봉(기본연봉/12)을 곱한 금액. 이경우, 잔여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잔여일수가 1년 이하일 경우는 1년을, 1년 초과 2년 이하일 경우는 2년을 적용한다.

① 원장은 청렴의무를 가지며, 세부사항은 「경영진의 보수 및 직무청렴의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2.12.28.>, <개정 2018.07.31.> [전문개정 2022.08.18.]

[종전 제9조 제9항~제11항은 제9조의2로 이동 <2022.08.18.>]

- 제9조의2(원장추천위원회) ① 원장추천위원회는 이사장이 추천하는 2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추천하는 2인, 지역 경제단체장 중 경상북도지사가 지명하는 자,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담당과장, 중소벤처기업부 담당과장, 경상북도 담당과장 등 8인으로 구성한다. 단, 법인에 최다 출연한 기관이 기초자치단체 또는 민간 기관인 경우 해당 기관에서 추천한 1인을 포함하여 9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사장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추천하는 경우에 법인의 임·직원 및 공무원(지방자치단체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을 위원 으로 추천할 수 없다. 다만, 국·공립대학교의 교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기타 원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 추천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조문신설 2022.08.18.]

-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며 그에 관한 부정 또는 부당한 사실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19., 2017.08.23.>
  - ④ 감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⑥ 감사가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궐위된 때에는 그 후임자를 차기이사회에서 선임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5.4.9.>

-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4.9.>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2. 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따른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 3. 법인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 4.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자
  -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로 판명된 때에는 임원의 자격을 상실하며,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퇴임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4.09.> [전문개정 2022.08.18.]
- **제12조(신분보장)** ①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 1. 법령, 정관 또는 적법한 이사회 의결사항을 위반 한 때
  -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때
  - 3. 신체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이사회가 인정한 때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임원을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2.12.28>

[전문개정 2022.08.18.]

제13조(조직 및 정원 등의 운영) ① 법인은 법인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직제규정에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09., 2022.08.18.>

- 1. 각 조직의 설치와 그 소관업무
- 2. 각 조직과 직위(직급)별 구성원 수
- ② 법인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단 또는 센터 단위 이상 업무의 변경)될경우에는 그에 따라 법인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되어야 한다. <신설 2022.08.18.>
- ③ 구성원이 파견·휴직·면직·파면 등으로 정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와 신규 사업에 따른 조직이 확대 된 경우에 한하여 법인은 신규채용을 할수 있다. 다만, 파견 및 휴직기간에 따른 신규채용은 법인의 인사관리규정상의 파견 및 휴직에 따른 결원 보충의 방법을 따른다. <신설 2022.08.18.>
- ④ 법인에서 기구개편, 정원조정, 파견·휴직자의 복귀 등에 따라 초과 현원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이후 그에 해당하는 직위(직급)에 결원이 생길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2.08.18.>
- ⑤ 법인의 효율적인 업무 지원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파견 공무원은 감사실장을 제외하고 부서의 장이 될 수 없다. <신설 2022.08.18.>
- ⑥ 원장은 파견 공무원의 복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공무원을 즉시 복귀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2.08.18.>
- ①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법인이나 단체 등에서 파견되어온 공무원과 직원(이하 "파견직원"이라 한다)은 별도의 법령과 규정이 없는 한「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및 법인의 인사관리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신설 2022.08.18.>

[제목개정 2022.08.18.]

- **제14조(구성원)** ① 법인의 구성원은 경영진과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15.04.09.>
  - ② 경영진은 원장과 직속부서장으로 구성하고, 직원은 경영진이 아닌 부서장 및 부서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04.09., 2020.05.07., 2022.08.18.>

③ 직원의 채용, 배치 및 이동, 보직, 승진, 평가, 보상, 복무, 퇴직 등 제반 인사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관리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5.04.09., 2018.05.24., 2018.07.31., 2022.08.18.>
[전문개정 2010.02.25., 2012.12.28.]

[종전 제14조 제4항은 제13조 제2항으로 이동 <2022.08.18.>]

[종전 제14조 제5항은 제13조 제3항으로 이동 <2022.08.18.>]

[종전 제14조 제6항은 제13조 제4항으로 이동 <2022.08.18.>]

- 제15조(겸직 제한) ① 법인의 구성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15.4.9.>
  - ② 원장은 이사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 원장을 제외한 법인의 구성원은 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통보한 지침의 범위 내에서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개정 2015.04.09., 2017.08.23.> [전문개정 2010.02.25, 2012.12.28., 2022.08.18.]
- 제15조의2(예산조치와의 병행) 법인은 부서를 설치하거나 직원의 정원을 증원할 때에는 반드시「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47조(예산편성 및 집행기준)를 따라야 하며, 예산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조문신설 2022.08.18.]
- 제15조의3(인력배치 기준) ① 건전경영 실현을 위한 최소인력 유지를 위해 지원부서(경영, 행정, 감사,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및 비정규직 지원인력) 인력비율은 현원의 30% 이내, 관리직(경영진) 비율은 정원의 20% 이내로 유지하여야 하며, 원장은 지원부서와 관리직의 비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원장은 지원부서와 관리직의 비율 등을 당해 회계연도 개시 후 3월이내에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은 긴급한 경영상 필요 또는 정부 정책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원부서 인력비율을 조정 할수 있다. [조문신설 2022.08.18.]

#### 제 3 장 이 사 회

제16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5.04.09., 2017.04.06., 2020.05.07., 2022.08.18.>

- 1.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
- 2. 사업실적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 3. 차입금 및 재산의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4. 인사 · 회계 · 보수 · 직제 등 중요 규정의 제정 · 개정에 관한 사항
- 5.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 6. 임원의 선임 및 해임, 파면에 관한 사항
- 7. 직속부서장 · 부설기관장의 파면 또는 해임 사항
- 8. 수익금의 기본재산 편입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9. 정원관리에 대한 사항
- 10. 원장의 보수에 대한 사항
- 11.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 제18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회계연도 개시 3월 이내에 개최한다. <개정 2012.12.28>
- ③ 임시이사회는 이사장, 원장, 감사 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사장이 소집하며, 이사장은 이사회 소집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신설 2012.12.28>, <개정 2013.06.19., 2015.04.09., 2017.08.23., 2022.08.18.>
- ④ 원장은 이사장의 업무를 대행하여 부의안건을 작성하며, 부의안건 작성을 완료하기 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28.>, <개정 2015.04.09., 2020.05.07., 2022.08.18.>

- ⑤ 원장은 이사회 소집 시 부의안건을 첨부하여 회의 개최 10일 전에 그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08.18.>
-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사회 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원장은 이사회 개최시 이사들에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의견을 개진 하여야 한다. 이때, 고의 또는 실수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의견을 개진하지 않거나 방해한 자는 인사위원회에서 중징계하여야 한다. <신설 2015.04.09.>, <개정 2017.08.23., 2020.05.07., 2022.08.18.>
- 제19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제17조 제1항 제6호(원장의 해임 또는 파면의 경우에 한한다) 경우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07.31., 2022.08.18.>
  - ②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에 참여하여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투표결과가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선임이사장, 이사장 순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2.12.28.>
  - ③ 이사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여 대리인에게 의결권 행사를 위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의 정족수에는 당해 이사가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④ 제17조 제3항 및 제5항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사회 의결에 대한 효력을 정지 시킬 수 있다. <신설 2020.05.07., 2022.08.18.>
  - ⑤ 이사회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의결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때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08.18.>

- 제20조(서면결의)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정관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의결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한때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없다. <개정 2015.04.09., 2022.08.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한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04.09., 2017.08.23.>
- 제21조(이사회의결 제척사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관련되는 이사장 내지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1. 이사장 및 이사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 2. 법인과 이사장, 법인과 이사 또는 이사 간의 법률상의 소송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 3. 법인과 이사장, 법인과 이사 또는 이사 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 제22조(의사록 등)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녹취한 바를 바탕으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이사 전원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하며, 이사회 의결 후 1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이사에게 의결사항 및 의사록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8>

#### 제 4 장 직속부서 등 [명칭개정 2010.02.25, 2012.12.28]

- 제23조(조직) ① 원장은 직속부서로 정책기획단, 기업지원단 및 특화센터를 둔다. <개정 2012.12.28., 2015.04.09., 2018.05.24., 2019.07.31.>
  - ② 원장은 별도의 조직운영이 필요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04.09.>

③ 직속부서, 부설기관, 감사실 및 그 외 부서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업시행자의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28., 2015.04.09.>

[전문개정 2010.02.25., 2022.08.18.]

[제목개정 2022.08.18.]

[종전 제23조 제5항은 제15조의2로 이동 <2022.08.18.>]

[종전 제23조 제6항은 제15조의3 제1항으로 이동 <2022.08.18.>]

[종전 제23조 제7항은 제15조의3 제2항으로 이동 <2022.08.18.>]

제24조(정책기획단) 정책기획단은 지역산업의 정책기획, 지역R&D기획 등의 업무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2제1항제4호의 사업을 수행하고, 선임부서로서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09.26., 2012.12.28., 2015.04.09., 2018.05.24.>
[전문개정 2010.02.25.]

제25조(기업지원단) 기업지원단은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2제2항의 일자리 정보 조사, 산·학·연·연계 협의회 운영, 지역기업 종합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지역기업지원을 위해 컨텍센터운영,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 지원, 기술거래, 기술투자촉진, 정책지정사업 수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02.25., 2015.04.09.>

제26조(특화센터) 특화센터는 공동연구개발, 연구개발지원, 기술지원, 장비 및 시생산 지원을 통한 산업화 지원 및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02.25., 2015.04.09.>

**제26조의2(부속센터)** <삭제 2022.08.18.> [조문신설 2010.02.25]

제27조(부설 지역산업평가단) <삭제 2012.12.28>

- 제28조(직속부서장 및 부설기관장) ① 직속부서장 및 부설기관장은 전문가의 능력과 경험을 인정받고 공무원(지방자치단체의회 의원을 포함하며, 국·공립 대학교의 교수는 예외로 한다)이 아닌 자 중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임명하며 상근이어야 한다. <개정 2013.06.19., 2015.04.09., 2017.08.23., 2018.07.31.>
  - 1. 정책기획단장과 기업지원단장은 공개모집과 부서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원장이 임명한다.
  - 2. 특화센터장과 부설기관장 중 이사회에서 공개모집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직책은 공개모집과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원장이 임명한다.
  - 3.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특화센터장과 부설기관장은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원장이 임명한다.
  - ② 직속부서장 및 부설기관장의 임용조건은 3년의 계약직으로 연임이 가능하며, 원장은 연임을 추천할 수 있다. 이때 부서장추천위원회에서는 원장의 추천에 대해 별도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연봉과 기타 대우 등에 관하여서는 원장과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이때 보수 관련 세부사항은 「경영진 보수 및 직무청렴의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04.09.>
  - ③ 직속부서장 및 부설기관장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부서장을 파면 또는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5.04.9., 2018.07.31.>
    - 1. 법령, 정관 또는 적법한 이사회 의결을 위반한 경우
    -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 3. 미흡한 경영성과 등 직무수행에 현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 4. 성과평가결과 2회 이상 최하위등급일 경우
  - ④ 직속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연임할 수 없다. <신설 2015.04.09.>
    - 1. 직속부서장 재임 시 감봉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 2. 성과평가결과 3회 이상 최하위등급일 경우

- ⑤ 직속부서장 및 부설기관장의 연봉과 기타 대우 등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통보한 지침 내에서 원장과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22.08.18.>
- ⑥ 직속부서장 및 부설기관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시에 원장과 성과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원장은 성과에 대한 평가를 연 1회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직속부서장 및 부설기관장의 연임 결정, 차기 연도 연봉 또는 성과급 산정 등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5.4.9., 2018.07.31.>
- ① 원장은 직속부서장 및 부설기관장의 성과에 대해 공정한 평가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임명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직속부서장 및 부설기관장은 평가를 생략한다. <개정 2018.07.31.>
- ⑧ 부서장추천위원회와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⑨ 직속부서장 및 부설기관장은 청렴의무를 가지며, 세부사항은 중소벤처 기업부 지침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02.25., 2012.12.28., 2022.08.18.]

[제목개정 2022.08.18.]

[종전 제28조 제9항은 제28조의2 제1항으로 이동 <2022.08.18.>]

[종전 제28조 제10항은 제28조의2 제2항으로 이동 <2022.08.18.>]

- 제28조의2(부서장추천위원회) ① 원장은 정책기획단장 및 기업지원단장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7인으로 부서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1. 이사장이 추천하는 2인
  -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
  - 3. 중소벤처기업부 담당과장,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담당과장, 경상북도의 담당과장
  - 4. 원장이 추천하는 1인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부서장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야 하며, 법인의 임·직원(직속부서장을 포함한다) 및 현직 공무원(지방자치단체의회 의원을 포함하며, 국·공립대학 교수는 예외로 한다.)은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 1. 지역기술혁신 분야 전문가
- 2. 경영전문가
- 3. 경영관련 단체의 임원
- 4.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 5. 변호사. 공인회계사
- 6. 조직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추천권자가 인정하는 자 [조문신설 2022.08.18.]
- 제29조(<u>전략경영실</u>) ① 원장은 법인 내의 경영전략, 예산 등 업무를 지원하는 전략경영실을 별도로 두고, 실장은 원장이 임면한다.
  - ② 전략경영실의 직무 범위는 경영전략, 예산 및 각 부서에 대한 지원 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0.02.25., 2019.07.31.<u>, 2024.02.08.</u>]

[제목개정 2024.08.08.]

- <u>제29조의2(행정지원실)</u> ① 원장은 법인 내의 행정 등 업무를 지원하는 행정지원실을 별도로 두고, 실장은 원장이 임면한다.
  - ② 행정지원실의 직무 범위는 회계, 경리, 시설관리 및 각 부서에 대한 행정지원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조문신설 2024.02.08.]

[종전 제29조의2는 제29조의3으로 이동 <2024.02.08.>]

제29조의3(감사실) ① 원장은 법인 내의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실을 별도로 두고, 소속직원은 원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2.12.28.>

② 감사실은 내부 조직의 통제제도를 내실화하고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며, 개선을 통하여 경영합리화를 이루기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5.04.09.>

[조문신설 2012.09.26.]

[제29조의2에서 이동 <2024.02.08.>]

#### 제 5 장 위 원 회

- 제30조(운영위원회) ① 법인의 주요사업 기획 등 업무추진에 따른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장직속의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02.25, 2012.12.28>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0.02.25., 2012.12.28., 2013.06.19., 2015.04.09., 2017.08.23., 2020.05.07.>
  - 1. 운영위원회 위원은 원장, 정책기획단장, 직속부서장 중 2인, 대구경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담당과장 및 경상북도 소관업무 담당과장, 원장이 추천하는 외부전문가 1인으로 구성한다. 그 외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에 따라 관련 전문인력과 참여기관 관계자를 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다. 단, 법인에 최다출연한 기관이 기초지자체 및 민간기관일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추천한 1인을 포함한다.
  -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원장은 위원회 소집 시 부의안건을 첨부하여 회의 개최 7일전에 그 목적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02.25, 2012.12.28., 2015.04.09.>
  - ④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0.02.25, 2012.12.28>
- 제31조(인사위원회) ① 법인은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장 직속의 인사위원회를 두며,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없다. 다만, 계약 직의 채용을 위한 경우 현직 공무원(지방자치단체의회 의원을 포함하며, 국·공립 대학교수는 제외한다.)이 아닌 외부위원 3인과 정책기획단장, 해당 직속부서장으로 인사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부위원을 1/2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09., 2022.08.18.>

- ② 인사위원회는 원장이 위촉하는 현직 공무원(지방자치단체의회 의원을 포함하며, 국·공립 대학교수는 제외한다.)이 아닌 외부전문가 5인과 정책 기획단장을 포함하여 원장이 지정하는 내부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으로 한다. <개정 2015.04.09., 2022.08.18.>
- ③ 제2항과 관련하여,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신설 2022.08.18.>
  -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 · 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
  - 3.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 4.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 5. 경험과 학식이 있다고 테크노파크 임원이 공문으로 추천한 사람
- ④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척 · 기피 · 회피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사전에 인사위원들에게 이를 공지하여야 하여야 한다. <신설 2022.08.18.>
  - 1. 대상자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응시자인 경우
  - 2. 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3. 그 밖에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 ⑤ 인사위원회 및 인사소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지원업무 소관부서의 장을 간사로 둘 수 있다. <신설 2022.08.18.>
- ⑥ 그 밖의 인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관리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2.08.18.>

[전문개정 2010.02.25, 2012.12.28]

- 제32조(자문위원회) ① 원장은 필요한 경우 기획, 예산, 자산 및 사업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자문위원회의 조직 ·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 6 장 재 산 및 회 계

제33조(재산)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설립 후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관 등이 출연한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
- 3. 설립 후 법인이 매입한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
- 4.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5. 시설임대·장비활용에서 발생한 수익금
- ③ 제2항 제5호에 따른 수익금 적립의 범위 및 절차는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기본재산의 목록은 <별표1>과 같다.
- ⑤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재산의 과실, 사업수입, 기타수입 등으로 구성하며,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충당한다.

[전문개정 2012.12.28]

- 제34조(재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기타 동 재산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권리를 포기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06.19., 2017.08.23.>
  - ②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 편성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 중소 벤처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의 용도를 변경하여 보통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3.06.19., 2017.08.23.>
  - ③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 ④ 기본재산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 ⑤ 기타 재산의 유지,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 제35조(재산의 평가)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에 의한다.
- **제36조(수익금의 관리)** ① 원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익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수익금 사용은 법인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여야 하며, 법인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이내여야 한다.
  - ③ 시설임대·장비활용 수익금은 재정자립화를 위한 신규인프라 구축 및 기존 인프라 관리비용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시설임대·장비활용 수익금 세부사용계획을 산업기술단지 회계처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
  - ⑤ 사용하고 남은 시설임대·장비활용 수익금은 매년 결산승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본재산에 일괄 반영한다.
  - ⑥ 기존 적립된 수익금도 기본재산에 반영한다. [전문개정 2012.12.28]
- 제37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부담, 채권의 포기나 자금의 차입 (당해연도 내에 상환하는 일시 차입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06.19.. 2017.08.23.>
- 제38조(회계의 원칙) ① 법인의 회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정·고시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회계거 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발생 시점에 처리한다. 이 경우 법인은 다른 법에 근거한 회계처리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2.03.15., 2013.06.19., 2015.04.9., 2017.08.23.>

- ② 예산회계 규정내 특별회계는 별도로 설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4.09.>
- ③ 예산 및 회계는 본부에서 통합하여 관리한다. <신설 2015.04.09.>

제39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일반회계연도에 의한다.

- 제40조(사업계획과 예산)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회계연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19., 2015.04.09., 2017.08.23.>
  - 1. 사업계획서
  - 2. 예산서
  - 3. 소속 임직원 등의 인건비, 계속비에 관한 설명서, 채무부담행위 설명서, 예산이월 설명서 등
  - ② 원장은 예산이 변경된 경우에도 지체 없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04.09.>, <개정 2017.08.23.> [전문개정 2012.03.15.]
- 제41조(결산)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8., 2013.06.19., 2015.04.09., 2017.08.23.>
  - 1. 업무현황, 재산목록, 감사결과 보고서
  - 2. 재무상태표 및 그 부속 명세서
  - 3. 운영성과표 및 그 부속 명세서
  - 4. <삭제>

[전문개정 2012.03.15.]

- 제41조의2(예산·결산에 관한 공통기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업기술 단지 사업시행자의 당해연도 예산 및 결산에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기준을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08.23.>
  - ② 법인은 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한 고유 업무에 대해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적인 예산·결산 평가를 받지 아니한다.
    [조문신설 2015.04.09.]
- 제42조(임원의 보수 결정과 제한) 법인의 상근직 임원에 대해서만 보수를 지급하며, 상근직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의 보상은 할수 있다. <개정 2012.12.28>
- 제43조(재산대여 금지) 법인의 재산은 그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제 7 장 보 칙

- **제44조(정관의 변경)** 법인이 승인받은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19., 2017.08.23., 2022.08.18.>
  - 1. 정관 변경안을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
  - 2.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
- 제45조(공무원의 파견) ① 원장이 요청한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파견 공무원은 감사실장을 제외하고 직속부서 및 직할부서의 장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04.09.>
  - ② 원장은 파견 공무원의 복귀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공무원을 복귀 조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8.]

- 제46조(검사·감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이사장은 법인의 경영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과 출연한 사항에 대해 검사 및 감사할 수 있으며, 법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04.09.>, <개정 2017.08.23.>
  - ② 이사장은 기관의 운영에 대해 감사(특별감사 포함)할 경우 중소벤처 기업부장관에게 감사자, 감사목적, 감사일정 등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04.09.>, <개정 2017.08.23., 2018.07.31.>
  - ③ 지방자치단체는 출연한 사항에 대해 검사할 수 있으며, 법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04.09.>
  - ④ 법인에 대한 외부감사는 경상북도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한다. 합동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감사시기와 방법은 경상북도와 중소벤처기업부간 협의 결과에 따른다. <개정 2012.12.28., 2013.06.19., 2017.08.23.>
- 제47조(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06.19., 2017.08.23.>
- **제48조(공고의 방법)** 법령 또는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해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해당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48조의2(공시의무)** 법인은 홈페이지를 통해 경영상황을 공시하여야 하며, 경영 공시 할 사항과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28., 2015.04.09.>
  - 1. 당해 연도의 원장의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 계획(매년 3월말까지)
  - 2. 전년도 결산서, 전년도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전년도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매년 4월 7일까지)
  - 3. 원장의 성과계약 달성 정도(이사장의 성과평가 완료 후 7일이내)
  - 4. 외부기관의 감사 결과 · 조치요구사항 등(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
  - 5.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다음해 3월말까지) [조문신설 2011.09.01.]

- 제49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법인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여 당초 지원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되도록 한다. <개정 2011.09.01, 2011.11.29., 2012.12.28, 2013.06.19., 2017.08.23.>
  - ② 법인의 청산인은 민법 제94조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중소벤처기 업부에 잔여재산 목록을 제출하고 지체 없이 권리이전 절차를 취한 후 재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19., 2017.08.23.>
- **제50조(시행규정)** ① 법인의 제 규정은 원장이 제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개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이를 규칙 또는 지침으로 제정한다. 이를 개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51조(준수 및 준용) ① 법인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2 및 제5조에 따라 설립·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동법과 민법의 적용을 받으며, 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근거한 규정이 있더라도, 법 제2조의2에 따라「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 ② 법인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과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그 운영 및법이 정한 고유한 업무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다른 기관의 관리·감독을받지 아니한다.
  - ③ 법인은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0.05.07.]

#### 부 칙 (1998.11.2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1.0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1.2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5.2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2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전부개정 2008.04.2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규정)** 이 정관의 시행 당시 종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정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 **제3조(경과규정)** 이 정관의 시행 이전에 임명된 기업지원단장과 전략산업 기획단장의 임기는 보장한다.

#### 부 칙(2009.12.2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02.2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정관의 시행 당시 종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정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경과규정)** 이 정관의 시행 이전에 임명된 전략산업기획단장, 기업 지원단장, 각 특화센터장의 임기는 보장한다.

부 칙(2011.09.0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1.2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3.1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예산·회계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기업회계의 원칙"을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정·고시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제17조 및 제20조, 제22조 중 "행정지원실장"을 "정책기획단장"으로, 제36조 제1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동조 제2호 중 "손익계산서"를 "운영성과표"로, 제 6 장 명칭 중 "손익"을 "운영성과"로, 제57조 제1항 중 "수익과 비용은"을 "운영성과는"으로, "손익계산서"를 "운영성과표"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수익과 비용은"을 "운영성과는"으로, 제60조를 "연차결산은 정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다"로 한다.

#### 부 칙(2012.09.2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인사관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5호 중 "행정지원실"을 "행정지원실, 감사대외협력관"으로 하고, <별표 1>의 임직원 직군·직급 체계 중 "경영지원실장"을 "행정지원실장, 감사대외협력관"으로 한다.
  - ② 직제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행정지원실"을 "행정지원실, 감사대외협력관"으로 하고, 동조 제3항 제7호에 "감사대외협력관"을 신설하고, 제11조 제1항 중 "회계, 경리"를 "경영전략, 예산, 회계, 경리"로, 동조 제2항 중 "행정지원실장"을 "행정지원실장, 감사대외협력관"으로, <별표 1>의 조직도 중 원장직속의 별도 부서로 "감사대외협력관"을 신설한다. <별표 3>의 업무분장표 중 정책기획단의 담당사무에서 "기관예산 편성총괄, 재단경영전략, 부서 단위업무 기획·조정, TP 기관경영평가 담당, 기관홍보, 국내외 협력 및 교류사업"을 삭제하고, 행정지원실의 담당사무에서 "기관예산 편성총괄, 재단경영평가 담당, 기관홍보, 국내외 협력 및 교류사업"을 추가하되, "복무 및 감사관리"를 삭제한다. 동 별표 중 구분항목에서 "감사대외협력관"을 추가하고, 감사대외협력관의 담당사무에 "내부복무 및 감사관리, 일상감사, 외부감사 대응, 지자체·특화센터 등 유관기관 협력 업무, 국내외 협력 교류"를 추가한다.

- ③ 예산 · 회계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 제1항, 동조 제2항, 제20조, 제22조 제1항 중 "정책기획단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한다.
- ④ 직제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대외협력담당관실"을 "그린마인지원센터"로 하고, "대학특화센터와"는 삭제하고, 동조 제2항 제1호 중 "경영기획팀"을 삭제하고, "혁신기획팀"을 추가한다. 동조 제2항 제4호 중 "총무과, 단지운영과"를 "경영기획팀, 총무팀, 단지운영팀"으로, <별표 1> 각 직속부서별 조직도 중 정책기획단의 하부조직에서 "경영기획팀"을 삭제하고, "혁신기획팀"을 추가, "대외협력담당관실"을 "그린마인지원센터"로 하고, 기업지원단의 하부조직에서 "대학특화센터"를 삭제하고, 행정지원실의 하부조직으로 "총무과, 단지운영과"를 "경영기획팀, 총무팀, 단지운영팀"으로 한다.

#### 부 칙(2012.12.2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6.1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04.2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4.0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 ① 이 정관 시행일 당시 제6조제1항 제7호부터 제11호까지 이사의 경우 그 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며, 이사장의 요구 또는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검토 할 수 있다.
  - ② 제6조제1항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이사가 소속한 기관은 제6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선임직 이사를 추천할 수 없다.
  - ③ 제9조제14항은 이 기준 시행일부터 임기 중인 원장에게도 적용되며, 이 기준 시행 이후 선임된 원장의 계약서에 제9조제14항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부 칙(2015.12.0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거쳐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 부 칙(2016.04.0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7.04.0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7.08.2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정부조직법,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및 정관 개정에 따라 제 규정·규칙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산업부"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일괄 개정한다.

부 칙(2018.05.2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7.3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1.0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4.0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7.3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법인 조직개편에 따라 제 규정·규칙·지침 중 "행정지원실"을 "전략경영지원실"로, "행정지원실장"을 "전략경영 지원실장"으로 일괄 개정한다.

#### 부 칙(2020.05.0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13항에 의한 원장의 자격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이 정관 시행일 이후 선임되는 원장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12.2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4.1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8.1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3항에 의한 원장의 자격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이 정관 시행일 이후 선임되는 원장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05.0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2.0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설립당초의 기본재산 목록

#### 1. 기본재산의 총괄표

(1998년 8월 27일 설립)

재 산 명	수 량	금 액(원)	비고
현금(예치금)		100,000,000	
합 계		100,000,000	

## 2. 기본재산 세부목록표

○ 현금

재 산	명	출 연 기 관	금 액(원)	비고
출 연	금	영남대학교	100,000,000	
하	계		100,000,000	

<별표 1의2> <신설 2010.01.07.>, <개정 2013.06.19., 2014.04.25., 2015.04.09., 2016.04.01., 2017.04.06., 2018.05.24., 2019.04.01., 2020.05.07., 2021.12.29., 2022.04.14., 2023.05.04.>

####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

(2023.05.04.현재)

#### 1. 기본재산의 총괄표

재 산	· 명	수 량	금 액(원)	비고
현금(예치금)			100,000,000	
현	금		11,254,571,237	
토	지	2	1,893,971,573	
건	물	13	50,520,825,919	
합	계		63,769,368,729	

## 2. 기본재산 세부목록표

#### ○현금

재 산 명	출 연 기 관	금 액(원)	고
출 연 금	영남대학교	100,000,000	
수 익 금	-	11,254,571,237	
합 계		11,354,571,237	

#### ○ 토지

구 분	소 재 지	지 번	취 득 가 액(원)	비고
그린카부품기술연구소	경북 경산시 진량읍 신제리	547	1,122,240,923	
첨단메디컬융합섬유센터	경북 경산시 와촌면 소월리	204 외3팔지	771,730,650	
합 계			1,893,971,573	

#### ○ 건물

건 물 명	소 재 지	지 번	취 득 가 액	비고
본 부 동	경북 경산시 삼풍동	300번지	9,069,148,579	
제1시험생산공장	경북 경산시 삼풍동	300번지	550,154,068	
제2시험생산공장	경북 경산시 삼풍동	300번지	770,506,800	
태양에너지연구센터	경북 경산시 삼풍동	300번지	550,000,000	
POST-BI동	경북 경산시 삼풍동	300번지	4,787,376,259	
BLU생산공장	경북 경산시 삼풍동	300번지	1,364,590,800	
경일대특성화센터	경북 경산시 하양읍 부호리	33번지	2,985,899,385	
대구가톨릭대특성화센터	경북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산35외51필지	2,000,000,000	
대구대특성화센터	경북 경산시 진량읍 내리리	15번지	2,819,108,336	
대구한의대특성화센터	경북 경산시 유곡동	290-1외56필지	2,300,000,000	
천연소재융합연구센터	경북 영천시 금노동	398-1	4,068,106,689	
그린카부품기술연구소	경북 경산시 진량읍 신제리	547	5,875,208,403	
첨단메디컬융합섬유센터	경북 경산시 와촌면 소월리	204	13,380,726,600	
합 계			50,520,825,919	

## <별표 2>

##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직위	위	성명	현직	임기	비고
공동이	사장	이의근	경상북도지사	_	
공동이	사장	김상근	영남대학교 총장	_	
0	사	이용원	경산대학교 총장	_	
0	사	이효태	경일대학교 총장	_	
0	사	박윤흔	대구대학교 총장	_	
0	사	김경환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총장	_	
0	사	최희욱	경산시장	_	
0	사	강성배	경산상공회의소 회장	_	
감	사	황성길	경상북도 지역경제국장	_	